

서울특별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785
----------	-----

2023년 7월 3일
교육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5월 30일, 옥재은 의원
2. 회부일자 : 2023년 6월 5일
3. 상정일자 : 제3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8차 교육위원회
(2023년 7월 3일 상정·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옥재은 의원)

1. 제안이유

- 노후된 학교의 리모델링, 증개축 공사 수행 및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해 모듈러 교실 설치가 필요한 학교에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안전을 강화하고 유동적·발전적 학습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지원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 3조).
- 나.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

조).

다.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에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 5조).

라. 모듈러교실을 설치함에 있어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23년 5월 30일 옥재은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785호로 발의되어 2023년 6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최근 노후된 학교의 증개축 공사 및 리모델링,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해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모듈러교실의 체계적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제정 취지에 대한 의견

- 모듈러 공법을 활용한 ‘모듈러교실’은 2021년 교육부의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 건물을 증개축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을 추진 하면서 학교시설 사업에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 모듈러 공법은 표준화된 실내 공간을 모듈 형태로 공장 제작하여 공사 현장에 설치·조립하는 건축 공법으로, 이는 표준화된 모듈러 유닛을 공장에서 제작한 후 운송과정을 거쳐 현장에서 설치하고 최소한의 내·외부 마감 작업을 통해 건축물을 완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¹⁾.
-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대방초, 한서초, 유현초에 모듈러교실을 설치하

1)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2019). 국내 모듈러 공법 기술현황 및 발전 방향.

였으며, 향후 4개 초등학교, 5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에 모듈러 교실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 그러나 모듈러 교실은 단기 설치 및 해체의 편리성이 있으나 설치 초기에 건축 자재의 유해성 및 공기질 문제, 스프링클러 설치 미흡 등으로 인한 소방안전시설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학교와 부모들의 반대가 적지 않았습니다.

○ 이에 교육부는 상기한 모듈러교실의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조달청과 협력하여 모듈러 교사 설치시 학생 안전 및 건강 관련 기준 제시, 임대형 모듈러 교사에 대한 기준 등을 마련하고,

소방청과는 모듈러교실의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기준 등을 마련하여 일반건물과 마찬가지로 소방시설의 검사 및 유지관리 점검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모듈러교실 설치와 관련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모듈러교실 설치 시 안전성 강화를 위해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관련 모듈러 임시교사 설치 기준 및 가이드라인²⁾을 마련하였으나 모듈러교실의 체계적 관리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표-1] 서울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예정) 현황

(단위: 천만원)

학교명	세부사업명	설치연도	교실수	설치방식	설치예산
대방초	과밀학급해소	2021	13실 규모	임대	170
한서초	과밀학급해소	2023	12실 규모	임대	319
유현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2023	28실 규모	임대	556
종암중	학교단위 공간혁신사업	2023	33실 규모	임대	247.5
신남초	학교단위 공간혁신사업	2023	48실 규모	임대	346.9

2) 서울시교육청 미래학교추진단(2022.12.), ‘서울형’ 그린스마트스쿨 모듈러 임시교사 설치 기준 및 가이드라인(안).

(단위: 천만원)

학교명	세부사업명	설치연도	교실수	설치방식	설치예산
울현초	과밀학급해소	2023	10실 규모	임대	213
동성중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2024	17실 규모	임대	136
동성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2024	35실 규모	임대	280
고대부중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2024	41실 규모	임대	328
용문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2024	48실 규모	임대	384
정의여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2024	54실 규모	임대	756
대광중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2024	26실 규모	임대	364
영파여중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2024	32실 규모	임대	288
중앙여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2024	15실 규모	임대	120
흥릉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2024	24실 규모	임대	408
갈현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2024	12실 규모	임대	168

○ 이에 동 조례안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의 모듈러교실 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은 최근 학교 증개축사업,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해 서울 시내 학교에 모듈러교실 설치가 확대되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의미있는 입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나. 조례안의 체계와 주요 조문별 검토

1) 조례안의 체계

○ 동 조례안은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정의, 교육감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4조에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에 재정 지원, 제6조에서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등 총 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조문 간 구성 및 체계 등에 있어 「자치법규 입법실무」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식적 측면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검토(안 제4조)

- 안 제4조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의 기본 방향 및 목표,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의 분석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소방·안전·보건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모듈러교실은 최근 노후된 학교 건물을 증개축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으로 인해 설치 학교수가 증가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서울시교육청의 기본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현재 모듈러교실을 운영 중인 학교에 대한 지원 내용 등도 학교별로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2021년 모듈러교실을 설치한 대방초는 모듈러교실 임대 이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반면, 2023년에 모듈러교실을 설치한 한서초의 경우에는 학교측의 요구로 본관동측 입구 캐노피 추가 설치, 계단실 최상층에 추락방지를 위한 아크릴 설치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2023년에 한신대학교 내에 모듈러교실을 설치한 유현초의 경우에는 설치 부지에 대한 임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현재 서울 시내에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대상 학교³⁾ 이외에도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 시설이 394개교나 존재하는바, 모듈러교실 설치에 대한 교육청차원의 지원기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간 지원에 있어 다양한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

3) 서울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현황

사업유형	계 (사립)	2021 (사립)	2022 (사립)	2023 (사립)	2024 (사립)	2025 (사립)
개축	87 (14)	22 (0)	21 (9)	18 (5)	11 (0)	15 (0)
리모델링	16 (12)	7 (5)	7 (5)	1 (1)	1 (1)	0 (0)
합계	103 (26)	29 (5)	28 (14)	19 (6)	12 (1)	15 (0)

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안 제4조가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 등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원 기준 등을 마련한 것은 확대일로에 있는 모듈러 교실의 체계적 관리 및 지원측면에서 의미있는 입법조치라 사료됩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밝힌바 있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8833, 2023.6.8.).

[표-2] 서울시교육청 4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 현황

(단위 : 개교)

구분	학교별						
	초	중	고	특수	고등기술	각종	합계
공립	196	65	21	0	0	3	285
사립	24	71	109	4	2	2	212
전체	220	136	130	4	2	5	497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내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듈러교실 설치가 필요한 학교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모듈러교실”이란 학교시설인 임시교사로서 골조, 마감재, 기계 및 전기설비 등을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 운송 및 단순 조립을 통해 축조한 형태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모듈러교실이 설치된 학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기본방향 및 목표
2.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의 분석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소방·안전·보건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재정 지원) ① 교육감은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재정 지원의 시기, 규모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